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산계정에 접대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의 처리방법 ※ 위 사례의 경우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172,000,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접대비 등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 162,000,000원을 10,000,000원 초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함 세무조정 ⦁10,000,000원은 자산계정인 건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 중인 자산･고정 자산 순으로 자산가액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함. ⦁건물의 당해 사업연도 상각비 중 자산감액처리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함. ➔ 당초 접대비 손금부인에 따른 자산감액 처리시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된 금액과 상계됨. 상각비× 자산감액처리잔액 ＝손금불산입액 건물(감가상각전 장부가액) - 건물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액 계산 (당해 연도) 40,000,000× 10,000,000 / 4,000,000,000 ＝100,000 손금불산입(유보) (2차 연도) 40,000,000× 9,900,000 / 3,960,000,000 ＝100,000 손금불산입(유보) (3차 연도 이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손금불산입)